

제 283 호

1972. 9. 1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 보

차

례

이 영구보존 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였다.

1972. 9. 1.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규칙

제 1249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노인회관 설치조례 시행규칙..... 3

◎ 고시

제 126 호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3

◎ 공고

제 206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4

제 207 호 서울특별시 면제조 공업협동조합 해산 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립새마을노인회관설치조례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1972년 9월 13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49호

서울특별시립새마을노인회관 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새마을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등) ① 노인회관에 관장 1인을 두되 용산구 사회과장이 된다. ② 관장밑에 사무보조원 1인과 경비원 3인을 둔다.

제3조(직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장리한다.

1. 노인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사용대상) 노인회관의 사용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지부연합회 회원과 기타 관장이 허가한 자로 하되 이를 무료로 한다.

제5조(개관시간) 노인회관은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입관거부)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인회관의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

1. 노인회관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자.
2. 질병자
3. 노인회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26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 제1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 9. 1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당동 18의 2, 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수교~사당동간 도로 확장공사

폭 35m 연장 11,250m 중 위의 위치 (5,841m ²)	4. 사업의 차수 및 준공 예정일 : 72.9. ~ 72.10.
3.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번 호	동명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1	영등포구 사당동	18의2	도 26	18의2	도 26	영등포구 동작동 56	고점동					
2	"	18의1	답 508	18의3	답 151	" 방배동 478-18	전정순	사당동산 15	김규식 김낙서	가등기		

공 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경기도와 경기도 시흥
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2. 9. 1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6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공원 일부 변경
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건설
부 고시 제 394 호 (72.9.1))을 도시 계
획법 제 12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

가. 공원 변경 조서

명칭	위치	면적 (m ²)		
		기성	변경	변경 후
청계산 공원	영등포구 방배동, 양재동 및 시흥군 파천면, 박계리, 주암리	13,249,150	(감) 44,900	13,204,250

나. 유류저장설비 결정 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경기도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92,4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⑥ 서울특별시공고제 207호

서울특별시 면제조공업협동조합해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합이 해산하였기
 공고한다.

1972. 9. 14.

서울특별시장

1. 조합명 : 서울특별시 면제조공업협동조합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490
3. 대표자 : 이사장 윤병우
4. 해산사유 : 종화의결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5. 해산일자 : 72. 8. 12. 끝.